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>

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 AAMC-HRA-201905-001 2019. 5. 22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자산운용감독실(자산운용총괄팀)

제 목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9.5.15.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붙 임 : 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 1부.
2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아쎈다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민성 (인)

작 성 자 : 조 현 주
전화번호 : 02-721-9395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 내용

1.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 명 (한 자)	직 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[1]	자격 요건 확인 결과
안영주	상무	임원	710407	2019.5.15	2021.5.14	준법감시 업무총괄	해당 사항 없음	맥쿼리증권 (2008.10~ 2012.11) 맥쿼리자산 운용 준법감시인 (2012.12~ 2018.02)	충족

2. 위험관리책임자 해임

성 명 (한 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[1]	비 고[2]
조현주	701219	2017.5.24	2019.5.15	임기 만료에 의한 해임	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안영주	직 위	상무/준법감시인

심 사 항 목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최근5년간 관련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	소속기관 확인서 및 금융투자협회 조회서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 대투증권 맥쿼리증권 맥쿼리자산운용	경력증명서 참조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충족	본인 및 소속기관 확인서 참조

종 합 의 견

위 사람은 법률 제26조에 충족함을 확인함

2019 년 5 월 15 일

아센다스자산운용주식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안 영 주 (인)

아센다스자산운용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손 민 성 (인)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